

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
기간: 2020 년 1 월 1 일부터
2020 년 12 월 31 일까지

(양쪽)

1. 후원금 수입명세서

단위 :천원

순번	발생 일자	후원금 종류	후원자 구분	비영리법인			기부금 단체 여부	후원자	내역	금액	비고
				비영리법인 구분	기타 내용	모금자 기관 여부					
1	04.10	1	4				전남다가센터연합회	비지정	1,000		
2	04.13	8	4				센터직원	비지정	300		
3	1~12	8	4				센터직원	비지정	1,525		
4	1~12	1	3				초록우산어린이재단	지정	14,114		
5	1~12	6	3				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	비지정	10,800		

2. 후원품 수입명세서

순번	발생 일자	후원품 종류	후원자 구분	비영리법인			기부금 단체 여부	후원자	내역	품명	수량/단위	상당 금액	비고
				비영리법인 구분	기타 내용	모금자 기관 여부							

3. 후원금 사용명세서

순번	사용일자	사용내역	금액	결연후원 금품 여부	산출기준	비고
1	04.13	코로나19 소상공인후원	300	N	보석김 10세트 10명*30,000원	
2	04.20	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지원	1,000	N	다문화가족 10명*100,000원	
3	09.29	방문지도사명절수당	600	N	지도사 4명*150,000원	
4	12.29	특성화사업 명절수당	925	N	특성화사업 직원 3명	
5	1~12	한글퇴움 학습지지원 운영비	14,114	NN	다문화자녀 학습지지원 30명	
6	1~12	센터장급여조정수당	3,935	N	조정수당 327,900원*12월	
7	1~12	센터장 직책&제수당	4,200	N	직책&제수당 350,000원*12월	
8	1~12	센터운영 기타운영비	2,665	N	직원피복비 등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]

4. 후원품 사용명세서

순번	사용일자	사용내역	사용처	결연후원 금품 여부	수량/ 단위	상당 금액	비고

5. 후원금 전용계좌

금융기관 등의 명칭	계좌번호	계좌명의
농협진도군지부 진도농협	30***** 35*****	진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(비지정 후원금)

진도군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

작성 요령

○ 후원금의 종류 구분

후원금의 종류	내용
1. 민간단체 보조금품	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
2. 외원단체 보조금품	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
3. 결연후원금품	아동·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
4. 법인임원 후원금품	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
5. 지역사회 후원금품	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
6. 후원회 지원금품	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
7. 자선모금품	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
8. 기타 후원금품	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

○ 후원자 구분

후원자 구분	내용	모금자 기관 여부	기부금단체 여부
1. 개인	개인	입력(Y/N)	입력안함
2. 영리법인	기업	입력(Y/N)	입력안함
3. 비영리법인	공익법인 등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사회복지법인, 기타*) → 비영리법인구분란에 기재 *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에 기재	입력(Y/N)	입력(Y/N)
4. 민간단체	비영리단체, 외국민간원조단체, 민간단체 기타	입력(Y/N)	입력(Y/N)
5. 국가기관	입법기관·사법기관·행정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)	입력안함	입력안함
6. 공공기관	공기업, 준정부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	입력안함	입력안함
7. 소관법인	해당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법인 *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	입력안함	입력안함

* 모금자 기관: 「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(기관)

** 기부금단체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·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·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

○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.

○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·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